

의안번호	2200826
의 퇴 인	이수진 의원
회 답 일	2024.6.25.
추 계 번호	24B1218
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의2 (공익적 제공기관 육성) 신설	국가는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공기관(이하 “공익적 제공기관”이라 한다)을 선정하여 육성하여야 함 1. 조직형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(제1항) 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. 조직목적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, 권익향상, 일자리 질 제고, 일자리 창출, 일·가정양립 증진, 취약계층 가사서비스 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.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	의무규정
	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
		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,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8조의2(공익적 제공기관 육성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(이하 “공익적 제공기관”)을 육성하는 내용임
 -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·육성하고 이에 대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
 -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규모와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,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장래에 발생할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
 - 또한 개정안은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,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으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이유미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